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26년 1분기)

2026. 5.



| 목 차

I.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1
------------------------	---

II. 주요 부적합 사례	5
---------------------	---

붙임

붙임 1.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26년 1분기 누적)	14
붙임 2. 한국산 식품 부적합 내역 ('26년 1분기 발표)	16
붙임 3. 미국 해외식품시설 검사 및 검사 거부 관련 규정	26
붙임 4. 미국 식품표시 중 영양표시 관련 사항	27
붙임 5. 중국 식품표시 관련 규정	28
붙임 6. 대만 등 국가별 인삼 '사이프로디닐'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30
붙임 7. 태국 등 국가별 딸기 '클로르페나피르' 농약 잔류허용기준	32
붙임 8. 일본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미생물 기준·규격	34
붙임 9. EU 신소재식품 정의	35

본 자료는 산업체 지원을 위한 <수출국 규제 정보 조사·제공>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 정부(7개국)가 발표하는 수입식품 검사 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기별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각 관련 기준 등은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이후 개정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문(해당사이트 URL 연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HS 코드는 일반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품목의 세부 사양 및 수입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시에는 반드시 관세청 등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석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정보발표일 기준)
- ▶ **자료 출처:** 중국(해관총서), 대만(TFDA), 일본(후생노동성), 미국(FDA), 유럽연합(RASFF), 호주(DAFF), 태국(FDA Thai)

※ 상기 7개국의 주요 법령 및 기준규격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문의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02-744-8894)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26년 1분기)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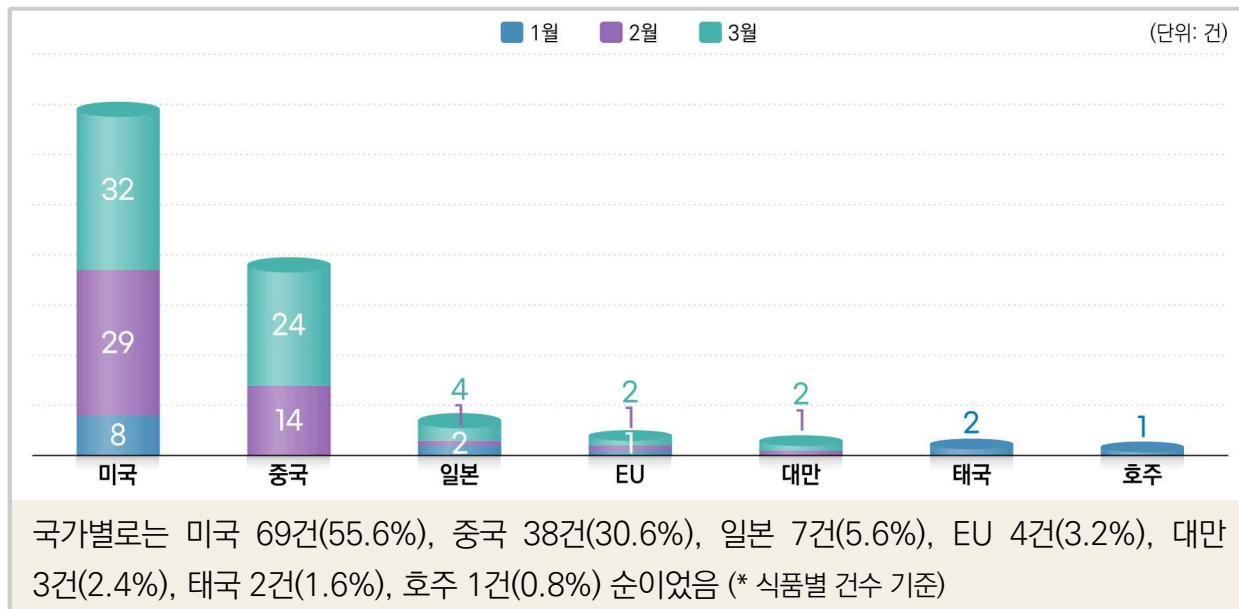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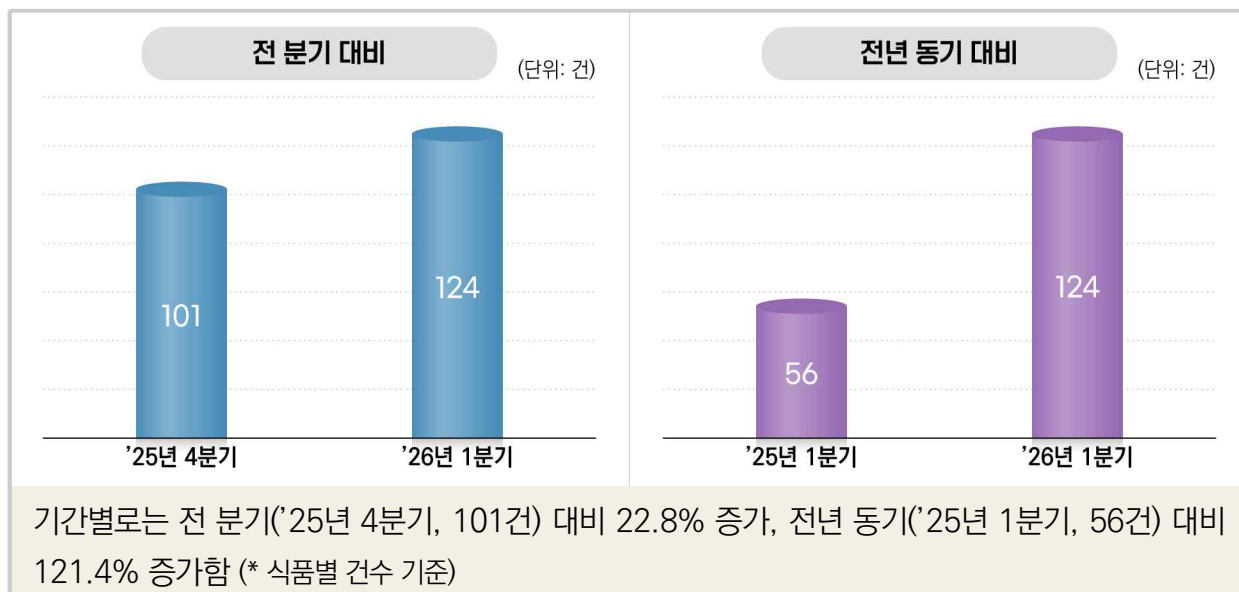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26년 1분기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호주, 태국)에서 부적합 조치된 한국산 식품은 총 124건으로 집계됨

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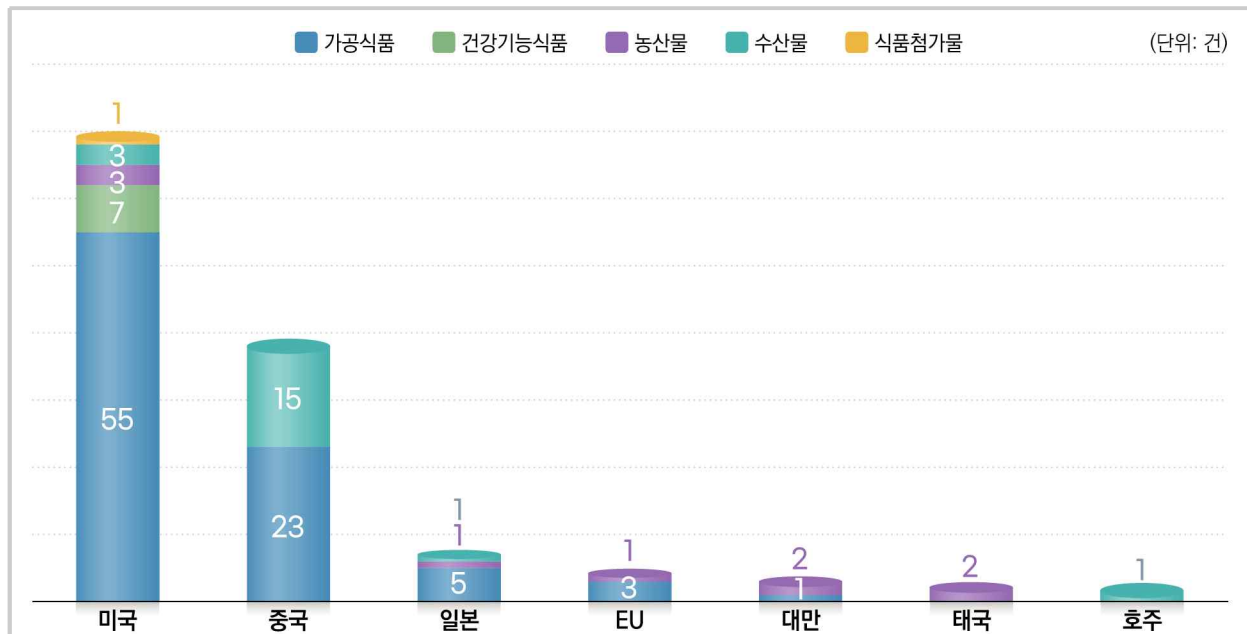


기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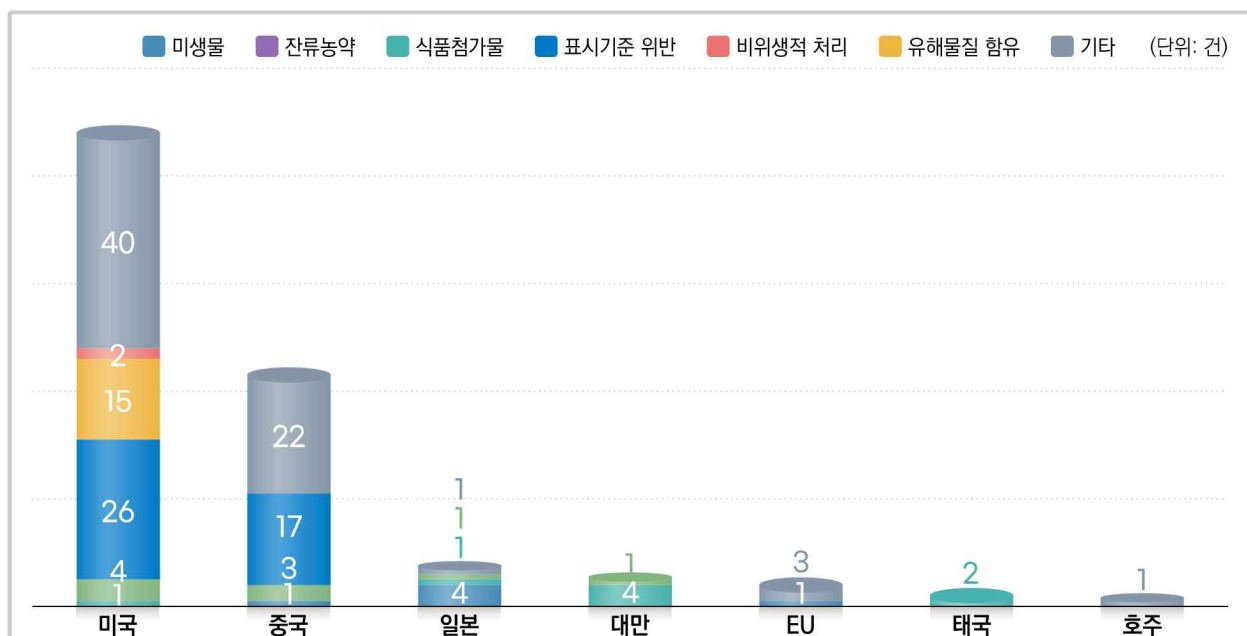
* 분석 대상 국가에 태국이 추가됨에 따라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건수는 기존 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식품별 현황



식품별로는 가공식품(87건), 수산물(20건), 농산물(9건), 건강식품류(7건), 식품첨가물(1건) 순이었으며, 가공식품의 국가별 부적합 건수는 미국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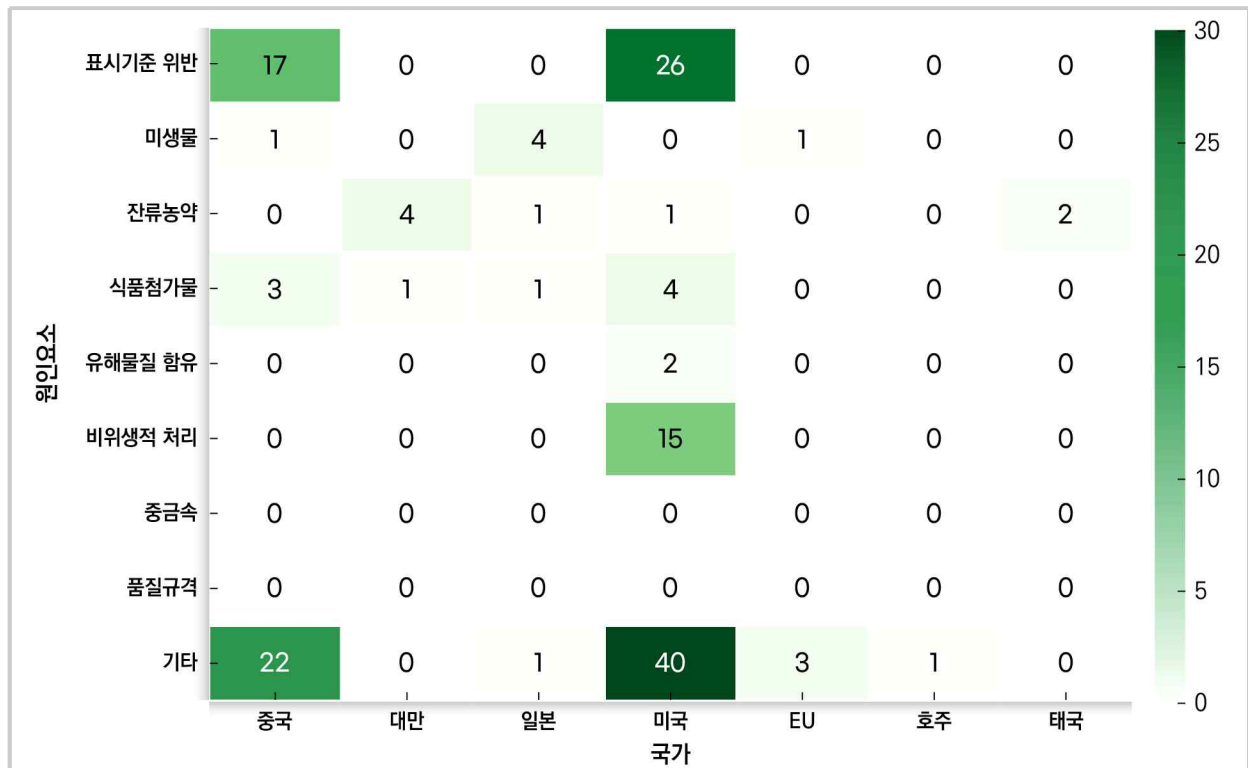
원인별 현황



원인별*로는 표시기준 위반(43건), 비위생적 처리(15건), 식품첨가물(9건), 잔류농약(8건), 미생물(6건), 유해물질 함유(2건) 등의 순이었으며, 기타 원인으로는 해외식품시설의 검사 거부, 화물증서 불일치, 제품 승인 미취득, 미승인 신소재 식품 등이 포함됨

* 품목 1건당 부적합 원인이 복수인 경우, 이를 개별 건으로 처리하여 식품별 현황 건수와 차이가 있음

국가별 원인요소 기준 부적합 현황('26년 1분기)



국가별 원인요소 기준 부적합은 미국-기타(40건)*, 미국-표시기준 위반(26건), 중국-기타(22건)**, 중국-표시기준 위반(17건), 일본-미생물(4건), 대만-잔류농약(4건), 미국-식품첨가물(4건) 순이었음

* 해외식품시설의 검사 거부(30건), 제조과정 미제출(2건) 등

** 화물증서 불일치(11건), 제품 승인(허가) 미취득(10건) 등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26년 1분기)

II

주요 부적합 사례

II

주요 부적합 사례

■ (부적합 사례①) 미국, 해외식품시설의 검사 거부에 따른 부적합 (붙임 3)

對수출국	미국	발표시기	2026년 2월, 3월
제품유형	과자류(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9건	처리조치	통관거부
수출 상대국 HS 코드	1905.90-1049		
부적합 사유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선정 배경	- 미국은 해외식품시설 실사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검사 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발생 시 통관거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추가정보	-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모니터링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임		
수출 시 유의사항	- 대미 수출업체는 FDA의 해외식품시설 검사에 대비하여 시설 출입, 자료 제출 및 현장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함 - 특히 검사 지연, 자료 미제공 등은 검사 거부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장 대응체계*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 FDA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체 정보(대표 이메일 등)의 정확히 입력 및 확인 필요		
국내 조치사항	- 미국 FDA에서 발송한 제조공장 실사 일정 관련 공식 메일에 대한 미응답으로 해당 업체가 레드리스트에 등재됨 - 제조사와 수출사 간의 소통(메일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회신이 지연됨 ☞ 영업자에게 미국 FDA의 메일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적합 사례②) 미국, 비탄산 청량음료의 영양정보 미표시 등 부적합 (붙임 4)

對수출국	미국	발표시기	2026년 2월
제품유형	비탄산 청량음료 (Noncarbonated Soft Drink, N.E.C.) 6건	처리조치	통관거부
수출 상대국 HS 코드	2202.99-9120		
부적합 사유	영양정보 미표시 등		
선정 배경	- 미국은 영양성분표를 포함한 식품 표시사항을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 - 동 사례는 비탄산 청량음료 수출 시 영양정보 미표시 등 표시기준 미준수가 통관거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추가정보	- 미국 비탄산 청량음료의 '영양정보 미표시' 부적합 사례 건수 ▶ ('19) 3건 → ('20) 2건 → ('22) 2건 → ('24) 1건 → ('25) 5건 → ('26.1분기) 6건		
수출 시 유의사항	- 미국으로 수출하는 음료류는 영양성분표를 포함한 필수 표시사항의 기재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함 - 특히 1회 제공량, 총 제공량, 주요 영양성분 등의 표시가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표시 부적합에 따른 통관거부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국내 조치사항	- 미국 수출 한국산 '음료'에서 표시사항 일부(영양정보)가 누락되어 표시기준 위반으로 통관거부 되었음 * 수출 제품은 수출 대상국의 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 ☞ 영업자에게 미국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적합 사례③) 중국, 초콜릿류 및 소스류의 라벨 부적합 (붙임 5)

對수출국	중국	발표시기	2026년 2월, 3월
제품유형	① 초콜릿류(11건) ② 소스류(4건)	처리조치	통관거부
수출 상대국 HS 코드	① 1806.90-0000 ② 2103.90-9000		
부적합 사유	라벨 부적합		
선정 배경	- 중국으로 수출되는 초콜릿류와 소스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서 라벨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동 사례는 중국 수출 가공식품의 라벨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추가정보	- 중국 수출 초콜릿류 및 소스류 '라벨 부적합' 사례 건수 ▶ ① 초콜릿류 ('24) 5건 → ('26.1분기) 11건 ② 소스류 ('22) 12건 → ('23) 12건 → ('25) 15건 → ('26.1분기) 4건		
수출 시 유의사항	- 가공식품 수출 시 현행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함 - 아울러 2027년부터 개정 표시기준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제도 변화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국내 조치사항	- 중국 수출 한국산 '초콜릿류' 및 '소스류' 등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중국어로 표기해야 하나, 제품 포장에 있는 영문 제품명과 중문 표기가 상이하여 라벨 부적합으로 통관이 거부됨 * 수출 제품은 수출 대상국의 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 ☞ 영업자에게 중국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적합 사례④) 대만, 인삼의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 (붙임 6)

對수출국	대만	발표시기	2026년 2월	
제품유형	신선 인삼(1건)	처리조치	반송 또는 폐기	
수출 상대국 HS 코드	1211.20-90000			
부적합 사유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약명	용도	검출치 (ppm)	기준치(ppm) 대만 한국 (수삼 기준 적용)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살균제	0.04	0.01 2.0
	티플루자마이드(Thi fluzamide)	살균제	0.13	불검출 1.0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살균제	0.02	불검출 0.7
선정 배경	- 대만은 일부 농약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준과의 차이로 수출 시 부적합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삼은 '22년 잔류농약 부적합이 다수 발생하여 '23년 수입검사 강화 품목에 포함된 바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품목임			
추가정보	- 대만 수출 인삼의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 건수 ▶ ('21) 6건 → ('22) 5건 → ('23) 1건 → ('26.1분기) 1건			
수출 시 유의사항	- 인삼 수출 시에는 사용 농약의 성분별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재배단계부터 농약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은 수입검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 품목 수출 시 출하 전 사전검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국내 조치사항	- 대만 수출 인삼의 잔류농약 부적합 관련 사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유하여 수출 농산물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영업자에게 대만 농약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적합 사례⑤) 태국, 딸기의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 (붙임 7)

對수출국	태국	발표시기	2026년 1월
제품유형	딸기(1건)	처리조치	-
수출 상대국 HS 코드	0810.10-0050		
부적합 사유	농약(살충제)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기준 초과 ※ 딸기의 클로르페나피르 잔류허용기준 (태국) 0.01 mg/kg(기본한계) / (한국) 0.5 mg/kg		
선정 배경	- 태국 정부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채소 및 과일을 고위험 목록 (Very high risk list)으로 관리하고 있음 - 동 사례는 한국산 딸기가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고위험 목록에 포함된 경우로, 태국 수출 시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추가정보	- 태국 수출 딸기의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 건수('24년부터 집계) ▶ ('24) 1건 → ('26.1분기) 1건		
수출 시 유의사항	- 태국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국내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 특히 농산물은 재배단계부터 농약 사용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해 잔류농약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고위험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수입검사 강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 품목 수출 시 관련 검사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국내 조치사항	- 태국 수출 딸기의 잔류농약 부적합 관련 사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유하여 수출 농산물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영업자에게 태국 농약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적합 사례⑥) 일본,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의 세균수 부적합 (붙임 8)

對수출국	일본	발표시기	2025년 10월				
제품유형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동결 직전 가열(기타 식료품-Mozzarella Cheese Ball)(2건)	처리조치	반송·폐기				
수출 상대국 HS 코드	1905.90-319						
부적합 사유	① 세균수 4.9×10^5 /g ② 세균수 4.1×10^5 /g ※ 해당 제품(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세균수 기준 <table><tr><th>일본</th><th>한국</th></tr><tr><td>100,000/g 이하 (냉동 전가열)</td><td>-살균제품: n=5, c=2, m=100,000, M=500,000 -비살균제품: n=5, c=2, m=1,000,000, M=5,000,000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 제외)</td></tr></table>			일본	한국	100,000/g 이하 (냉동 전가열)	-살균제품: n=5, c=2, m=100,000, M=500,000 -비살균제품: n=5, c=2, m=1,000,000, M=5,000,000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일본	한국						
100,000/g 이하 (냉동 전가열)	-살균제품: n=5, c=2, m=100,000, M=500,000 -비살균제품: n=5, c=2, m=1,000,000, M=5,000,000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선정 배경	-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는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동결 직전 가열),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가열 후 섭취하는 냉동식품)로 분류되어 국가 간 상이한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부적합 사례임						
추가정보	- 일본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동결 직전 가열)의 미생물 부적합 사례 건수 ▶ ('22) 3건 → ('23) 1건 → ('24) 1건 → ('25) 4건→ ('26.1분기) 2건						
수출 시 유의사항	- 수출 전 제품의 식품 유형 및 섭취 방식에 따른 적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함 - 특히 일본은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에 대해 별도의 미생물 기준을 적용하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내 조치사항	- 일본 수출 한국산 '모짜렐라 치즈볼'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되어 통관 거부 되었음 - 국가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이 상이하여 발생한 부적합으로 국내에는 적합하여 별도 조치 없음 ☞ 영업자에게 일본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적합 사례⑦) EU, 미승인 신소재식품 함유 관련 부적합 (불임9)

對수출국	EU	발표시기	2026년 3월
제품유형	① 차(tea, 'Korean Ginseng Tea') ② 고사리(Pteridium aquilinum)	처리조치	① 수취국 통보(오스트리아) ② 수취국 통보, 시장 철폐(오스트리아)
수출 상대국 HS 코드	① 2101.20-9299 ② 0710.80-9580		
부적합 사유	미승인 신소재식품 함유		
선정 배경	- 최근 EU 내에서 미승인 신소재식품 함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 간 식품원료 관리 기준 차이에 따른 수출 위험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동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식품 등에 사용 가능한 원료가 EU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추가정보	- EU 수출 식품의 미승인 신소재식품 사용 관련 위반 사례 건수 ▶ ('21) 2건 → ('24) 1건 → ('25) 1건 → ('26) 2건		
수출 시 유의사항	- 국가별 식품원료 관리 기준이 상이하므로 수출 전 식품에 사용된 원료가 해당 국가에서 허용된 식품원료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EU는 신소재식품에 대해 사전 승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목록 등재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국내 조치사항	- 국가별로 사용이 가능한 식품원료가 상이하여 발생한 부적합으로 국내에는 적합하여 별도 조치 없음 ☞ 영업자에게 EU 신소재식품(Novel Food) 승인현황 카달로그에서 식품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제조·수출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1.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26년 1분기 누적)
2. 한국산 식품 부적합 내역 ('26년 1분기 발표)
3. 미국 해외식품시설 검사 및 검사 거부 관련 규정
4. 미국 식품표시 중 영양표시 관련 사항
5. 중국 식품표시 관련 규정
6. 대만 등 국가별 인삼 '사이프로디날'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7. 태국 등 국가별 딸기 '클로르페나피르'
잔류허용기준
8. 일본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미생물 기준·규격
9. EU 신소재식품 정의

붙임 1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26년 1분기 누적)

■ 식품별 현황 (1분기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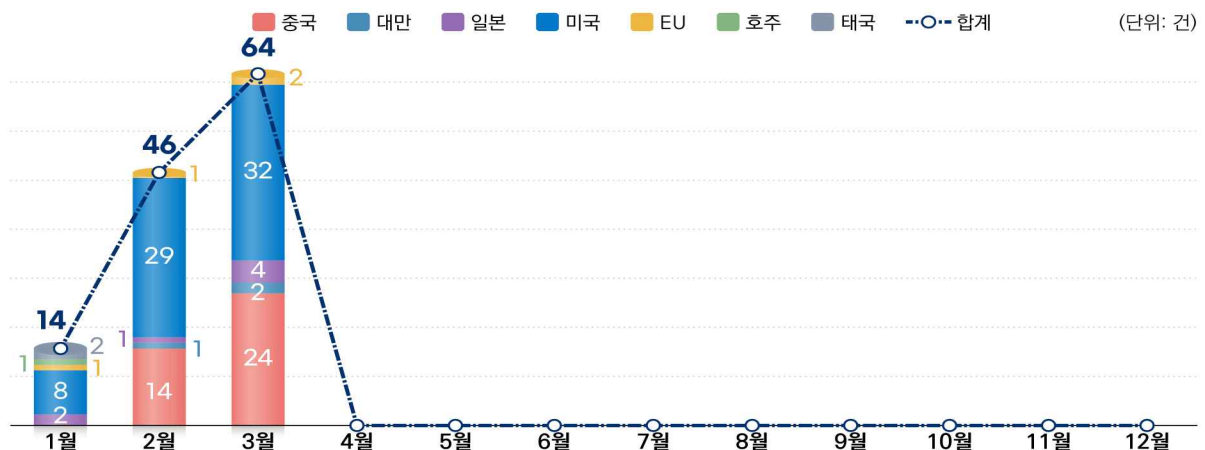
구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호주	태국	합계
가공식품	23	1	5	55	3	-	-	87
건강식품류	-	-	-	7	-	-	-	7
농산물	-	2	1	3	1	-	2	9
수산물	15	-	1	3	-	1	-	20
식품첨가물	-	-	-	1	-	-	-	1
합계	38	3	7	69	4	1	2	124

■ 원인별 현황 (1분기 발표)

구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호주	태국	합계
미생물	1	-	4	-	1	-	-	6
잔류농약	-	4	1	1	-	-	2	8
식품첨가물	3	1	1	4	-	-	-	9
표시기준 위반	17	-	-	26	-	-	-	43
비위생적 처리	-	-	-	15	-	-	-	15
유해물질 함유	-	-	-	2	-	-	-	2
기타	22	-	1	40	3	1	-	67
합계	43	5	7	88	4	1	2	150

* 식품 1건당 부적합 원인 항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이를 개별 집계

[그림] 월별 주요국 부적합 식품 현황(건수)



■ 국가별 현황 (1분기 발표) (*원인요소 기준)

국가	구분	가공식품	건강 식품류	농산물	수산물	기구용기 포장	식품 첨가물	합계
중국	미생물	1	-	-	-	-	-	1
	식품첨가물	3	-	-	-	-	-	3
	표시기준 위반	17	-	-	-	-	-	17
	기타	2	-	-	20	-	-	22
	합계	23	0	0	20	0	0	43
대만	잔류농약	-	-	4	-	-	-	4
	식품첨가물	1	-	-	-	-	-	1
	합계	1	0	4	0	0	0	5
일본	미생물	3	-	-	1	-	-	4
	잔류농약	-	-	1	-	-	-	1
	식품첨가물	1	-	-	-	-	-	1
	기타	1	-	-	-	-	-	1
	합계	5	0	1	1	0	0	7
미국	잔류농약	-	-	1	-	-	-	1
	식품첨가물	3	1	-	-	-	-	4
	표시기준 위반	16	10	-	-	-	-	26
	비위생적 처리	14	-	-	1	-	-	15
	유해물질 함유	-	-	-	2	-	-	2
	기타	36	-	2	-	-	2	40
	합계	69	11	3	3	0	2	88
EU	미생물	1	-	-	-	-	-	1
	기타	2	-	1	-	-	-	3
	합계	3	0	1	0	0	0	4
호주	기타	-	-	-	1	-	-	1
	합계	0	0	0	1	0	0	1
태국	잔류농약	-	-	2	-	-	-	2
	합계	0	0	2	0	0	0	2

붙임 2 한국산 식품 부적합 내역 ('26년 1분기 발표)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수출 상대국 HS 코드	처리조치
중국	'26.2 ('25.12 부적합)	조미료(调味料)	기타(요구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증명자료 미제출)	2103.90-9000	통관거부
		냉동 갈치(冻白带鱼)	기타(화물증서 불일치)	0303.89-1000	
		Grape Sparkling (葡萄味碳酸饮料) (저당(低糖))	식품첨가물(아세설팜칼륨 식품안전 국가표준 규정 부적합)	2202.10-0090	
		냉동 갈치(冻带鱼)	기타(①제품 승인(허가) 미취득, ②화물증서 불일치)	0303.89-1000	
		냉동 가오리(冻孔鲷鱼)	기타(①제품 승인(허가) 미취득, ②화물증서 불일치)	0303.82-0000	
		냉동 삼치(冻蓝点马鲛鱼)	기타(①제품 승인(허가) 미취득, ②화물증서 불일치)	0303.59-9090	
		프로바이오틱스 곡물 발효 복합분말(고형 음료) (益生菌谷物发酵复合粉 (固体饮料))	식품첨가물(안식향산 식품안전 국가표준 규정 부적합)	2106.90-9090	
		무설탕 자일리톨 껌 (无糖木糖醇口香糖)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2106.90-9090	
		아몬드 코코아버터 대체 초콜릿 제품 (扁桃仁代可可脂巧克力制品)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90-0000	
		코코아버터 대체 초콜릿 (통포장) (代可可脂巧克力(胶罐装))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90-0000	
		코코아버터 대체 초콜릿 (代可可脂巧克力)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90-0000	
		코코아버터 대체 초콜릿 (代可可脂巧克力)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90-0000	
		코코아버터 대체 초콜릿 (代可可脂巧克力)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32-0000	
		코코아버터 대체 밀크초콜릿 (代可可脂牛奶巧克力)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32-0000	
	'26.3 ('26.1 부적합)	냉동 병어(冻鲭鱼)	기타(제품 승인(허가) 미취득)	0303.89-3000	
		냉동 푸른점박이 고등어 (冻蓝点马鲛鱼)	기타(①제품 승인(허가) 미취득, ②화물증서 불일치)	0303.59-9090	
		냉동 봉장어(冻星康吉鳕)	기타(①제품 승인(허가) 미취득, ②화물증서 불일치)	0303.59-9090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수출 상대국 HS 코드	처리조치
		아몬드 코코아버터 대체 초콜릿 제품 (扁桃仁代可可脂巧克力制品)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90-0000	
		코코아버터 대체 초콜릿 (代可可脂巧克力)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90-0000	
		코코아버터 대체 초콜릿 (代可可脂巧克力)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90-0000	
		코코아버터 대체 초콜릿 (代可可脂巧克力)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90-0000	
		코코아버터 대체 밀크 초콜릿 (代可可脂牛奶巧克力)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1806.90-0000	
		황금 밀크향 조미분말 (黄金奶香调味粉)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2103.90-9000	
		한식 양념용 분말 (韩式料理腌制粉)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2103.90-9000	
		새콤달콤 조미 소스(酸甜调味酱)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2103.90-9000	
		꿀·레몬소스 조미즙 (蜂蜜柠檬酱调味汁)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2103.90-9000	
		고추장(辣酱)	표시기준 위반(라벨 부적합)	2103.90-9000	
		크리스피 오징어스틱 (香脆鱿鱼条) (가열조리 동물성 수산제품)	식품첨가물(이초산나트륨 식품안전 국가표준 규정 부적합)	1605.54-0000	
	'26.3 ('26.2 부적합)	냉동 푸른점박이 고등어 (冻蓝点马鲛鱼)	기타(화물증서 불일치)	0303.59-9090	
		냉동 도미(冻鲷鱼)	기타(화물증서 불일치)	0303.89-9090	
		냉동 도미(冻鲷鱼)	기타(화물증서 불일치)	0303.89-9090	
		냉동 도미(冻鲷鱼)	기타(화물증서 불일치)	0303.89-9090	
		고르곤졸라치즈 옥수수(콘) 스낵 (冈古佐拉芝士玉米卷)(팽화식품)	기타(화물증서 불일치)	1904.10-0000	
		냉동 병어 100~200g/마리 (冻鲱鱼)	기타(제품 승인(허가) 미취득)	0303.89-9090	
		냉동 병어 200~300g/마리 (冻鲱鱼)	기타(제품 승인(허가) 미취득)	0303.89-9090	
		냉동 병어 300~400g/마리 (冻鲱鱼)	기타(제품 승인(허가) 미취득)	0303.89-9090	
		냉동 병어 500g 이상/마리 (冻鲱鱼)	기타(제품 승인(허가) 미취득)	0303.89-9090	
		자연발효 국간장 (自然发酵汤酱油)	미생물(균락총수 식품안전 국가표준 규정 부적합)	2103.10-0000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수출 상대국 HS 코드	처리조치
대만	'26.2	신선 인삼(新鮮人參) (Fresh Panax Ginseng)	잔류농약 (①사이프로디닐(Cyprodinil) 0.04 ppm, ②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0.13 ppm, ③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0.02 ppm)	1211.20-90000	반송·폐기
	'26.3	신선 감귤류(鮮柑橘) (Fresh Hallabong)	잔류농약(노발루론(Novaluron) 0.08 ppm)	0805.29-00905	
		찍어먹는 소스(沾醬汁) (Sauce)	식품첨가물(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Ethyl p-Hydroxybenzoate) 0.085 g/kg 검출) (*업체가 제출한 원제조사 성분 비율에 따르면, 제품 성분 중 간장(醬油) 베이스가 25.162%이며, 그중 간장이 5% 포함됨.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간장에 첨가된 것으로, 역산하면 간장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함량은 6.76 g/kg으로 환산됨)	2103.90-90905	
일본	'26.1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加熱後摂取冷凍食品) 동결 직전 미가열(凍結直前未加熱) - 기타 이매패류(その他の二枚貝類) - 냉동 삶은 굴(冷凍ボイルカキ)	미생물(대장균 양성)	1605.51-990	반송·폐기
		인스턴트 홍차 (インスタント紅茶)	식품첨가물(스테아릴젖산나트륨 사용 - 원료인 식물성 크림에 대상외 사용)	2101.20-110	
	'26.2	신선 들깨(生鮮エゴマ)	잔류농약 (인독사카브(Indoxacarb) 0.30 ppm)	1207.99-090	
	'26.3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無加熱摂取冷凍食品) - 게류(かに類) - Frozen Boiled Red Snow Crab Meat	미생물 (대장균군 양성)	1605.10-029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加熱後摂取冷凍食品) 동결 직전 가열(凍結直前加熱) : 기타 식료품(その他の食料品) - Mozzarella Cheese Ball	미생물 (세균수 4.9×10^5 /g)	1905.90-319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加熱後摂取冷凍食品) 동결 직전 가열(凍結直前加熱) : 기타 식료품(その他の食料品) - Mozzarella Cheese Ball	미생물 (세균수 4.1×10^5 /g)	1905.90-319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수출 상대국 HS 코드	처리조치
		그 밖의 기타 음료 (その他の他の飲料) - Nitrogen Shot Cold Brew Coffee	기타 (보존기준 부적합 - 상온에서 보관)	2101.11-210	
미국	'26.1 ('25.12 부적합)	기타 동물 부산물 및 추출물 (Animal By-Products and Extracts, N.E.C.)	식품첨가물 (유해첨가물)	2106.90-9998	통관거부
		떡 (Rice Cakes)	표시기준 위반 (색소 미표시)	1901.90-9195	
		멸치 (Anchovy)	비위생적 처리 (위생불량(오물 오염 가능성이 있거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조리, 포장, 보관))	0305.54-0000	
		부드러운 젤리 사탕(젤리빈, 검드롭 등), 견과류 및 과일, 초콜릿 무함유 (Jellied Candy, Soft (Jelly Beans, Gum Drops, Etc.), Without Nuts and Fruit)	표시기준 위반(색소 미표시), 식품첨가물(유해색소)	1704.90-3590 (젤리, 검드롭)	
		부드러운 젤리 사탕(젤리빈, 검드롭 등), 견과류 및 과일, 초콜릿 무함유 (Jellied Candy, Soft (Jelly Beans, Gum Drops, Etc.), Without Nuts and Fruit)	표시기준 위반(색소 미표시), 식품첨가물(유해색소)	1704.90-3590 (젤리, 검드롭)	
		양파 구근(황색, 백색, 적색 등) 주스 또는 음료 (Onion Bulb (Yellow, White, Red, Etc.), Juice or Drink)	비위생적 처리 (공정관리(통제) 부적합)	2009.90-8039	
		해조류, 건조 또는 페이스트 (Seaweed, Dried or Paste)	유해물질 함유	1212.21-0000	
		해조류, 건조 또는 페이스트 (Seaweed, Dried or Paste)	유해물질 함유	1212.21-0000	
	'26.2 ('26.1 부적합)	무알코올 음료(Nonalcoholic Beverages, N.E.C.)	기타 (제조공정 미제출)	2202.10-0075	
		무알코올 음료(Nonalcoholic Beverages, N.E.C.)	기타 (제조공정 미제출)	2202.10-0075	
		인간 및 동물용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및 비전통적 식이 특수제품 (Vitamin, Mineral, Proteins and Unconventional Dietary Specialities for Humans and Animals, N.E.C.)	표시기준 위반 (①'식이보충제' 용어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2106.90-9998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수출 상대국 HS 코드	처리조치
		인간 및 동물용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및 비전통적 식이 특수제품 (Vitamin, Mineral, Proteins and Unconventional Dietary Specialities for Humans and Animals, N.E.C.)	표시기준 위반 (①‘식이보충제’ 용어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2106.90-9998	
		인간 및 동물용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및 비전통적 식이 특수제품 (Vitamin, Mineral, Proteins and Unconventional Dietary Specialities for Humans and Animals, N.E.C.)	표시기준 위반 (①‘식이보충제’ 용어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2106.90-9998	
		인간 및 동물용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및 비전통적 식이 특수제품 (Vitamin, Mineral, Proteins and Unconventional Dietary Specialities for Humans and Animals, N.E.C.)	표시기준 위반 (①‘식이보충제’ 용어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2106.90-9998	
		인간 및 동물용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및 비전통적 식이 특수제품 (Vitamin, Mineral, Proteins and Unconventional Dietary Specialities for Humans and Animals, N.E.C.)	표시기준 위반 (영어 미표기)	2106.90-9998	
		인간 및 동물용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및 비전통적 식이 특수제품 (Vitamin, Mineral, Proteins and Unconventional Dietary Specialities for Humans and Animals, N.E.C.)	표시기준 위반 (영어 미표기)	2106.90-9998	
		비탄산 청량음료 (Noncarbonated Soft Drink, N.E.C.)	표시기준 위반 (①성분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2202.99-9120	
		비탄산 청량음료 (Noncarbonated Soft Drink, N.E.C.)	표시기준 위반 (①성분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2202.99-9120	
		비탄산 청량음료 (Noncarbonated Soft Drink, N.E.C.)	표시기준 위반 (①성분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2202.99-9120	
		비탄산 청량음료 (Noncarbonated Soft Drink, N.E.C.)	표시기준 위반 (①성분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2202.99-9120	
		비탄산 청량음료 (Noncarbonated Soft Drink, N.E.C.)	표시기준 위반 (①성분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2202.99-9120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수출 상대국 HS 코드	처리조치
		대두(두부 관련 내용은 산업 37 참조), 건조 또는 페이스트 (Soybeans (See Industry 37 for Bean Curd), Dried or Paste)	비위생적 처리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2103.10-0000	
		인삼(Ginseng (Herbal & Botanicals, Not Teas))	잔류농약	1211.20-1020	
		인삼(Ginseng (Herbal & Botanicals, Not Teas))	기타 (미승인 신약)	1211.20-1020	
		인삼(Ginseng (Herbal & Botanicals, Not Teas))	기타 (미승인 신약)	2106.90-999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Protectant))	기타(①해외 미등록시설, ②요구정보 미제공)	2823.00-0000 (순수 이산화티타늄) 3206.11-0000 (건조기준이산화티타늄 80%이상 함유)	
		무알코올 음료류(Nonalcoholic Beverages, N.E.C.)	기타 (저산성식품 제조업체 미등록)	2202.10-0075	
		무알코올 음료류(Nonalcoholic Beverages, N.E.C.)	기타 (저산성식품 제조업체 미등록)	2202.10-0075	
		비탄산 청량음료 (Noncarbonated Soft Drink, N.E.C.)	표시기준 위반 (①영양정보 미표시, ②일반명 미표시)	2202.99-9120	
		참기름, 정제, 단일 성분 (Sesame Oil, Refined, Single Ingredient)	비위생적 처리(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기타(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515.50-0000	
		식용유 제조용 식물성 유지 종자 (Vegetable Oil Seed Stock, N.E.C.)	비위생적 처리(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기타(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515.90-8190	
		부드러운 젤리 사탕(젤리빈, 검드롭 등), 견과류 및 과일 무함유(초콜릿 무함유) (Jellied Candy, Soft (Jelly Beans, Gum Drops, Etc.), Without Nuts and Fruit (Without Chocolate))	비위생적 처리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1704.90-3590 (젤리, 검드롭)	
		부드러운 젤리 사탕(젤리빈, 검드롭 등), 견과류 및 과일 무함유(초콜릿 무함유) (Jellied Candy, Soft (Jelly Beans, Gum Drops, Etc.), Without Nuts and Fruit (Without Chocolate))	비위생적 처리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1704.90-3590 (젤리, 검드롭)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수출 상대국 HS 코드	처리조치
		부드러운 젤리 사탕(젤리빈, 검드롭 등), 견과류 및 과일 무함유(초콜릿 무함유) (Jellied Candy, Soft (Jelly Beans, Gum Drops, Etc.), Without Nuts and Fruit (Without Chocolate))	비위생적 처리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1704.90-3590 (젤리, 검드롭)	
		부드러운 젤리 사탕(젤리빈, 검드롭 등), 견과류 및 과일 무함유(초콜릿 무함유) (Jellied Candy, Soft (Jelly Beans, Gum Drops, Etc.), Without Nuts and Fruit (Without Chocolate)))	비위생적 처리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1704.90-3590 (젤리, 검드롭)	
		부드러운 젤리 사탕(젤리빈, 검드롭 등), 견과류 및 과일 무함유(초콜릿 무함유) (Jellied Candy, Soft (Jelly Beans, Gum Drops, Etc.), Without Nuts and Fruit (Without Chocolate))	비위생적 처리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1704.90-3590 (젤리, 검드롭)	
		부드러운 젤리 사탕(젤리빈, 검드롭 등), 견과류 및 과일 무함유(초콜릿 무함유) (Jellied Candy, Soft (Jelly Beans, Gum Drops, Etc.), Without Nuts and Fruit (Without Chocolate))	비위생적 처리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1704.90-3590 (젤리, 검드롭)	
	'26.3 ('26.2 부적합)	커스터드나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류(Sweet Goods Without Custard or Cream Filling, N.E.C.)	기타(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비위생적 처리(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1905.90-1049	
		기타 빵류 제품 (Other Bakery Products, N.E.C.)	기타(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비위생적 처리(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1905.90-1070	
		커스터드나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류(Sweet Goods Without Custard or Cream Filling, N.E.C.)	기타(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비위생적 처리(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1905.90-1049	
		과자류 (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1049	
		과자류 (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1049	
		과자류 (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1049	
		과자류 (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1049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수출 상대국 HS 코드	처리조치
		고추, 건조 또는 페이스트 (Pepper, Hot, Dried or Paste)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2103.90-9091	
		뿌리 & 괴경 채소, 주스 또는 음료 (Root & Tuber Vegetable, Juice or Drink,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2009.90-4000	
		충전 또는 모조 우유 또는 우유류 제품 (Filled or Imitation Milk or Milk Type Product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2106.90-9998 (식물성 유지 함유 밀크 대체 조제품 등) 2202.99-9120 (두유, 아몬드, 오트 음료 등)	
		충전 또는 모조 우유 또는 우유류 제품 (Filled or Imitation Milk or Milk Type Product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2106.90-9998 (식물성 유지 함유 밀크 대체 조제품 등) 2202.99-9120 (두유, 아몬드, 오트 음료 등)	
		충전 또는 모조 우유 또는 우유류 제품 (Filled or Imitation Milk or Milk Type Product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2106.90-9998 (식물성 유지 함유 밀크 대체 조제품 등) 2202.99-9120 (두유, 아몬드, 오트 음료 등)	
		과자류 (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1049	
		과자류 (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1049	
		과일 및 견과 무함유 하드 캔디(초콜릿 무함유) (Hard Candy Without Nuts and Fruit, N.E.C. (Without Chocolate))	표시기준 위반(색소 미표시), 식품첨가물(유해색소)	1704.90-2500	
		쌀알 구운 과자류 (Rice Grain Snack (Whole, Split), Baked)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4.90-0140	
		쌀알 구운 과자류 (Rice Grain Snack (Whole, Split), Baked)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4.90-0140	
		쌀알 구운 과자류 (Rice Grain Snack (Whole, Split), Baked)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4.90-0140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수출 상대국 HS 코드	처리조치
		과자류 (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1049	
		대구류 (Pollack, Pollock)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0305.51-0000	
		과자류 (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1049	
		과자류 (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1049	
		과자류 (Snack Foods Not Elsewhere Mentioned, N.E.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1049	
		쌀 플레이크/페이퍼 (Rice Flakes/Paper)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9090	
		과육(핵심 과실), 토핑 또는 시럽(프릭리 페어 선인장) (Core Fruit, Topping or Syrup (Prickle Pear Cactus))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0813.40-9000 (동결건조 과일) 2008.97-9094 (당류 첨가 동결건조 과일)	
		쌀 플레이크/페이퍼 (Rice Flakes/Paper)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9090	
		딸기, 건조 또는 페이스트 (Strawberries, Dried or Paste)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0813.40-9000	
		쌀 플레이크/페이퍼 (Rice Flakes/Paper)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5.90-9090	
		동양식 면류(새우, 닭고기, 쇠고기, 바닷가재, 게 등의 향미가 첨가된 것 또는 무향 등) (Oriental Noodles (Flavored with Shrimp, Chicken, Beef, Lobster, Crab, Plain, Etc.))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1902.30-0060	
		서대류 (Sole)	기타 (미국 검사관의 시설 검사 출입 미허용)	0302.23-0000 (신선/냉장) 0303.33-0000 (냉동) 0305.59-0001 (건조)	
		고추류(카이엔 고추, 매운 고추), 분쇄 또는 거칠게 분쇄된 향신료 (Capsicums (Cayenne Chili, Hot Peppers), Ground, Cracked (Spice))	기타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위반)	0904.22-7600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수출 상대국 HS 코드	처리조치
		고추류(카이엔 고추, 매운 고추), 분쇄 또는 거칠게 분쇄된 향신료 (Capsicums (Cayenne Chili, Hot Peppers), Ground, Cracked (Spice))	기타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위반)	0904.22-7600	
		대구류, 냉동 훈제, 어류 (Pollack, Pollock, Cold Smoked, Fish)	비위생적 처리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 포장된 제품)	0305.51-0000	
EU	'26.1	말차 라테 (Matcha latte)	기타 (국경통제소 공식통제 없이 미승인 화물 수입)	2202.99-9990	압류(벨기에)
	'26.2	떡볶이 (ready meals 'Tteokbokki noodles')	미생물 (바실러스 세레우스(1.5×10^5 CFU/g))	1902.30-1020	회수, 시장철수 등 회원국별 조치
	'26.3	차 (tea, 'Korean Ginseng Tea')	기타 (미승인 신소재식품 인삼 추출물)	2101.20-9299	수취국 통보(오스트리아)
		고사리 (Pteridium aquilinum)	기타 (미승인 신소재식품)	0710.80-9580	수취국 통보, 시장 철수(오스트리아)
호주	'26.1 ('25.11 부적합)	건다시마 (Dried kelp)	기타 (요오드 3,460 mg/kg)	1212.21-9045	보류 명령
태국	'26.1	딸기 (Fresh Strawberry)	잔류농약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0810.10-0050	-
		감 (Fresh Persimmon)	잔류농약 (부프로페진(Buprofezin))	0810.70-0089	-

※ 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HS 코드는 일반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품목의 세부 사양 및 수입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미국 해외식품시설 검사 및 검사 거부 관련 규정

관련 규정

- 연방법전(US Code) 21편 9장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 VIII 수입 및 수출 - §384c 해외 식품시설 검사¹⁾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해외식품시설 또는 해외정부의 검사 거부’ 관련 산업계 지침²⁾

주요 내용

- **(FDA 해외식품시설 검사)** FDA는 FD&C법에 따라 해외식품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검사관은 시설 방문 전 해당 시설 및 소재 국가의 정부·관할 당국과 검사 일정을 조율함
- **(검사 활동)** FDA 검사관은 식품의 재배·제조·가공·보관 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 검토, 사진 촬영 및 샘플 채취 등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함
- **(검사 거부)** 해외식품시설이 FDA 검사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검사 수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는 검사 거부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해당 식품의 미국 반입이 거부됨

구분	검사 거부로 간주되는 주요 사례 (*일부 발췌)
검사 일정 수립 거부	· 검사 요청 후 24시간 이내(또는 합의된 기간 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 · 검사 일정 협의 과정에서 최초 응답 이후 특정 시점에 연락을 중단하는 경우 · 검사 관련하여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검사 일정 수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검사 시작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 검사 일정에 합의한 후 합리적 사유 없이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단, 악천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거나 시설 일시 폐쇄 등 합리적 근거와 재개 일정 제시 시 검사 거부로 간주하지 않음)
검사 허가 거부	· 시설 출입을 거부하거나 검사 당일 합리적 사유 없이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검사 대상 구역(제조·가공·보관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일부 구역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 기록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 사진 촬영, 샘플 채취 등 검사에 필요한 활동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합리적 사유 없이 검사 시간을 제한하거나 검사 완료 전 조사관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 검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검사 수행을 방해·지연시키는 경우

- **(이의 제기)** 검사 거부로 간주되어 수입경보(Import Alert)에 등재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주·운영자 또는 담당 대리인은 FDA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1) 미국 연방법전(US Code) 제21편 9장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 VIII 수입 및 수출 - §384c 해외식품시설 검사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3-title21/html/USCODE-2023-title21-chap9-subchapVIII-sec384c.htm>)

2)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해외식품시설 또는 해외정부의 검사 거부’ 관련 산업계 지침(<https://www.fda.gov/media/109635/download>)

붙임 4 미국 식품표시 중 영양표시 관련 사항

관련 규정

- 연방법전(US Code) 21편 9장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 IV 식품 - §343 부정표시 식품³⁾
- 연방규정집(21 CFR §101) 식품 표시⁴⁾ 중 §101.9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영양정보 주요 표시 요건

- **(영양정보 표시 의무)** 영양정보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misbranded) 식품으로 간주됨(FD&C Act §343(q))

- (영양정보 표시사항)

구분	내용(21 CFR §101.9)
필수 표시사항	• 식품 1회 제공량(serving size)* • 총 제공량 수 • 열량 • 의무 표시 영양성분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Daily Value)**
의무 표시 영양성분	• 총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 나트륨 • 총 탄수화물(식이섬유, 총당류, 첨가당) • 단백질 • 비타민 및 무기질(비타민D, 칼슘, 철, 칼륨, 엽산***)
자발적 표시사항	포화지방 열량, 다가불포화지방, 단일불포화지방, 플루오린화물,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당알코올
표시 면제	▲매장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영양성분이 극미량이거나 포장 크기가 작은 식품, ▲벌크·유통용 식품 등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면제되거나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 4세 이상 일반인이 1회당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양을 해당 식품에 적합하게 가정용 계량척도로 표시한 수치

** 하루 필요 열량(2,000칼로리; 1~3세 어린이는 1,000칼로리)에 대한 식품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의 비율

*** 영양보충제로서 첨가되거나 관련 강조표시가 기재될 경우

3) 미국 연방법전(US Code) 제21편 9장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 IV 식품 - §343 부정표시 식품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3-title21/html/USCODE-2023-title21-chap9-subchapIV-sec343.htm>)

4) 미국 연방규정(21 CFR 101 식품표시)
(<http://www.ecfr.gov/cgi-bin/text-idx?SID=e7beef0b711318e426f2cb948ce211b3&mc=true&node=pt21.2.101&rgn=div5>)

붙임 5 중국 식품표시 관련 규정

관련 규정

- GB 7718-2011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⁵⁾
- GB 7718-202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⁶⁾
- GB 7718-202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문답⁷⁾
- GB 28050-2011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⁸⁾
- GB 28050-2025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⁹⁾
- GB 27050-2025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 문답¹⁰⁾
-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¹¹⁾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 사전포장식품의 표시 관련 기본사항을 규정한 표준

구분	GB 7718-2011(현행)	GB 7718-2025(개정) (시행일: 2027년 3월 16일)
적용범위	사전포장식품	기존 범위에 더해, 포장재·용기에 사전 제조되어 계량 방식으로 판매되는 식품까지 포함
의무표시 사항	①식품명, ②배합원료표, ③순합량 및 규격, ④생산업체 및/또는 중개판매업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⑤생산일자 및 품질유지기한, ⑥보관조건, ⑦식품생산허가증번호, ⑧제품표준코드	현행 ①~⑧ 외 영양라벨,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
제품명 중 성분명 표시	제품명에 언급된 특정 배합원료 또는 성분이 라벨에 특별 강조되지 않은 경우, 해당 배합원료나 성분의 첨가량 또는 제품 중 함량 표시 불필요	식품 중 배합원료·성분이 제품명에 특별 강조한 경우, 해당 배합원료·성분의 첨가량 또는 제품 중 함량 의무 표시
무(無), 불포함(不含有) 등 강조표시	-	최종 제품 내 특정 배합원료나 성분의 함량이 '0'일 경우, '무', '불포함' 등의 어휘 및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원재료 또는 성분 특별 강조 가능
수입식품	수입식품의 대리업체, 수입업체 또는 중개업체의 정보만 표시하고, 해외 생산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표시 의무 없음	수입식품 일반 요구사항, 성분표, 생산자 및 경영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원산국(지역), 날짜표기, 섭취그룹, 섭취량 및 섭취방법 등 세부 요건 규정
디지털 라벨	-	디지털 라벨 사용 자율적 선택 가능
알레르기 유발물질	권장	의무
	• (알레르기 유발물질) ①글루텐 함유 곡물 및 그 제품(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펀트밀 또는 교배 품종 계열), ②어류 및 그 제품, ③땅콩 및 그 제품, ④대두 및 그 제품, ⑤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새우, 바닷가재, 게 등), ⑥알류 및 그 제품, ⑦견과류 및 씨앗류 제품, ⑧유(乳) 및 유제품(유당 포함) • (표시방법) ▲배합원료표 내 유발물질에 밑줄 또는 굵은 글씨체 등으로 강조, 또는 ▲배합원료표 주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 표기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

- 영양표시에 관한 세부 기준규격을 규정한 표준

구분	GB 28050-2011(현행)	GB 28050-2025(개정) (시행일: 2027년 3월 16일)
의무표시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현행 5종 + 2종(포화지방(산), 당) 추가
영양소참고치 (NRV)	관련 규정 존재	비타민D, 아연 NRV 값 등 업데이트 및 콜레스테롤 NRV 삭제
영양강조	(함량강조) 식품 중 열량 또는 영양성분 함량을 '고', '저', '함유', '없음' 등으로 강조	(함량 강조) 식품 중 열량 또는 영양성분 함량을 '고', '저', '함유', '없음', '급원', '풍부한 함유', '불포함', '적음' 등으로 강조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경고문구	-	"어린이·청소년은 '소금·기름·설탕'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함" 경고문구 신설
영양라벨 서식	현행 6종 서식 존재	현행 + 2종 (▲100g당, 1회 제공량당 표시 서식, ▲여러 종류가 동봉된 식품의 표시 서식) 추가
기타	관련 규정 존재	면제 식품 범위, 일부 영양성분 허용 오차 범위 조정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 식품표시의 표기 방법을 규범화하기 위한 규정 (시행일: 2027년 3월 16일)

구분	주요 내용
날짜표기	• (생산일자/품질유지기한 표시) 주표시면의 독립 공간에 명확히 표시 • (의무 표시사항) 배경과 대비되는 문자·기호·숫자 및 도안으로 표시 • (표기 방식) 연-월-일 순으로 표기
식품명칭 요건	• (동물성 원료 사용 식품) ▲식품명에 가축·가금육 또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가 포함된 경우, 해당 원료가 주요 원료여야 함, ▲식품명에 한 가지 유형만 표시된 경우, 사용된 원료는 모두 해당 가축·가금육 또는 동물성 수산물이어야 함, ▲식품명에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표시된 경우, 사용된 원료는 첨가량이 많은 순으로 배열 • (식물성 원료로 만든 유사 동물성 식품) '모조', '채식(비건)', '○○식물' 등 표시 필수 • (원료 첨가없이 풍미만 구현한 식품) 식품명에 '○○ 맛' 또는 '○○ 풍미' 등 문구 표시 필수
순함량 표기	• '정량포장상품의 계량 감독관리 방법'¹²⁾ 규정 준수

5) 중국 GB 7718-2011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https://down.foodmate.net/standard/yulan.php?itemid=28222>)

6) 중국 GB 7718-202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https://down.foodmate.net/standard/yulan.php?itemid=162772>)

7) 중국 GB 7718-202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문답(<https://www.nhc.gov.cn/sps/c100087/202509/bc824a504ec34c27883db73f14c20d44.shtml>)

8) 중국 GB 28050-2011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 (<https://down.foodmate.net/standard/yulan.php?itemid=28488>)

9) 중국 GB 28050-2025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 (<https://down.foodmate.net/standard/yulan.php?itemid=162773>)

10) 중국 GB 27050-2025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문답(<https://www.nhc.gov.cn/sps/c100087/202509/470fa4ff5de14dd38619223cce9db4e7.shtml>)

11) 중국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https://www.samr.gov.cn/zw/zfxgk/fdzdgknr/fgs/art/2025/art_4edc1e8d894890a012aac1e974c1ff.html)

12) 중국 정량포장상품의 계량 감독관리 방법(https://www.moj.gov.cn/pub/sfbgw/flfggz/flfggzbmzg/202305/t20230515_478807.html)

붙임 6

대만 등 국가별 인삼 '사이프로디닐'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구분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호주	태국
사이프로디닐 (Cyprodinil)	2.0	(신선) 0.1	0.01*	2.0	0.75	3	0.3	0.03*
		(건조) 0.2						
티플루자מיד (Thiifluzamide)	1.0	미설정	불검출	1.0**	불검출	0.01	미등재 농약	0.01**
펜티오파라드 (Penthiopyrad)	0.7	미설정	불검출	30.0	3.0	0.05	2*	0.01**

(한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1호)

* 수삼 기준 적용

(중국) GB 2763-2026 식품 중 농약 최대잔류제한량¹³⁾

▶ (참고)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농약과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식품에 대해 일률기준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대만)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¹⁴⁾

▶ (참고)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제3조에 따라, 표준의 첨부표 1과 2에 잔류허용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함

* 기타(채소 및 과일류) 기준 적용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¹⁵⁾

* 기타 채소 기준 적용

** (참고) 2026년 9월 18일부터 딸기에 대한 티플루자마이드 잔류허용 기준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따른 일률기준(0.01 ppm)으로 적용됨¹⁶⁾

(미국) 연방규정집 40 CFR 180 ‘식품 중 농약 잔류물의 잔류허용기준 및 면제’¹⁷⁾

▶ (참고) 연방규정집 제40편 180.5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미설정의 경우에는 불검출(zero tolerances) 기준을 적용함

(EU) 유럽집행위원회 잔류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MRL) 데이터베이스¹⁸⁾

▶ (참고) 식품 중 잔류농약 규정 (EC) No 396/2005에 따라, 부속서 II에 잔류허용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0.01 mg/kg 기준을 적용함

(호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 별표 20 최대허용기준¹⁹⁾

▶ (참고) 식품기준코드 기준 1.1.1 – 10(6)(d)에 따라 별표 20 최대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농약수의약품 화학물질은 판매 목적의 식품에 첨가가 가능하지 아니 함

*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APVMA)의 작물 그룹 분류²⁰⁾에 따라, 뿌리 및 덩이줄기 채소(감자 제외) 기준 적용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제460호 ‘잔류농약 함유 식품’²¹⁾

▶ (참고) 목록 1의 농약은 불검출. 그 외 농약은 목록 2의 기준을 적용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아세안(ASEAN) 잔류허용기준 순으로 적용하며, 모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목록 3의 기본한계(default limit)를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0.01 mg/kg을 적용함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적용

** 기본한계(default limit) 적용

13) 중국 GB 2763-2026 식품 중 농약 최대잔류제한량 (<https://www.sdtdata.com/fx/fmoa/tsLibCard/202003.html>)

14) 대만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https://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15)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datald=78334000&dataType=0&pageNo=1)

16)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에 대해서 (<https://www.mhlw.go.jp/content/11135200/001565491.pdf>)

17) 미국 연방규정집 40 CFR 180 ‘식품 중 농약 잔류물의 잔류허용기준 및 면제’
(<https://www.ecfr.gov/current/title-40/chapter-I/subchapter-E/part-180>)

18) 유럽집행위원회, 잔류농약 MRL 데이터베이스 중 인삼 검색
(<https://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pesticides-database/start/screen/mrls>)

19)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 별표 20 최대허용기준 (<https://www.legislation.gov.au/F2015L00468/latest/text>)

20)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 작물 그룹, 뿌리 및 덩이줄기 채소 (<https://www.apvma.gov.au/crop-groups/root-tuber-vegetables>)

21)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제460호 ‘잔류농약 함유 식품’ (<https://ratchakitcha.soc.go.th/documents/75163.pdf>)

붙임 7

태국 등 국가별 딸기 '클로르페나피르' 잔류허용기준

구분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호주	태국
클로르페나피르 (Chlorfenapyr)	0.5	미설정	0.5	5.0	불검출	0.01	0.02 [*]	0.01 [*]

(한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1호)

(중국) GB 2763-2026 식품 중 농약 최대잔류제한량²²⁾

▶ (참고)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농약과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식품에 대해 일률기준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대만)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²³⁾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²⁴⁾

(미국) 연방규정집 40 CFR 180 '식품 중 농약 잔류물의 잔류허용기준 및 면제'²⁵⁾

▶ (참고) 연방규정집 제40편 180.5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미설정의 경우에는 불검출(zero tolerances) 기준을 적용함

(EU) 유럽집행위원회 잔류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MRL) 데이터베이스²⁶⁾

(호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 별표 20 최대허용기준²⁷⁾

▶ (참고) 식품기준코드 기준 1.1.1 - 10(6)(d)에 따라 별표 20 최대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농약수익약품 화학물질은 판매 목적의 식품에 첨가가 가능하지 아니 함

* 동물성 식품 제외 기타 모든 식품 기준 적용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제460호 '잔류농약 함유 식품'²⁸⁾

▶ (참고) 목록 1의 농약은 불검출. 그 외 농약은 목록 2의 기준을 적용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아세안(ASEAN) 잔류허용기준 순으로 적용하며, 모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목록 3의 기본한계(default limit)를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0.01 mg/kg을 적용함

* 기본한계(default limit) 적용

22) 중국 GB 2763-2026 식품 중 농약 최대잔류제한량 (<https://www.sdtdata.com/fx/fmoa/tsLibCard/202003.html>)

23) 대만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https://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24)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78334000&dataType=0&pageNo=1)

25) 미국 연방규정집 40 CFR 180 '식품 중 농약 잔류물의 잔류허용기준 및 면제'
(<https://www.ecfr.gov/current/title-40/chapter-I/subchapter-E/part-180>)

26) 유럽집행위원회, 잔류농약 MRL 데이터베이스 중 딸기 검색
(<https://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pesticides-database/start/screen/mrls>)

27)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 별표 20 최대허용기준 (<https://www.legislation.gov.au/F2015L00468/latest/text>)

28)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제460호 '잔류농약 함유 식품' (<https://ratchakitcha.soc.go.th/documents/75163.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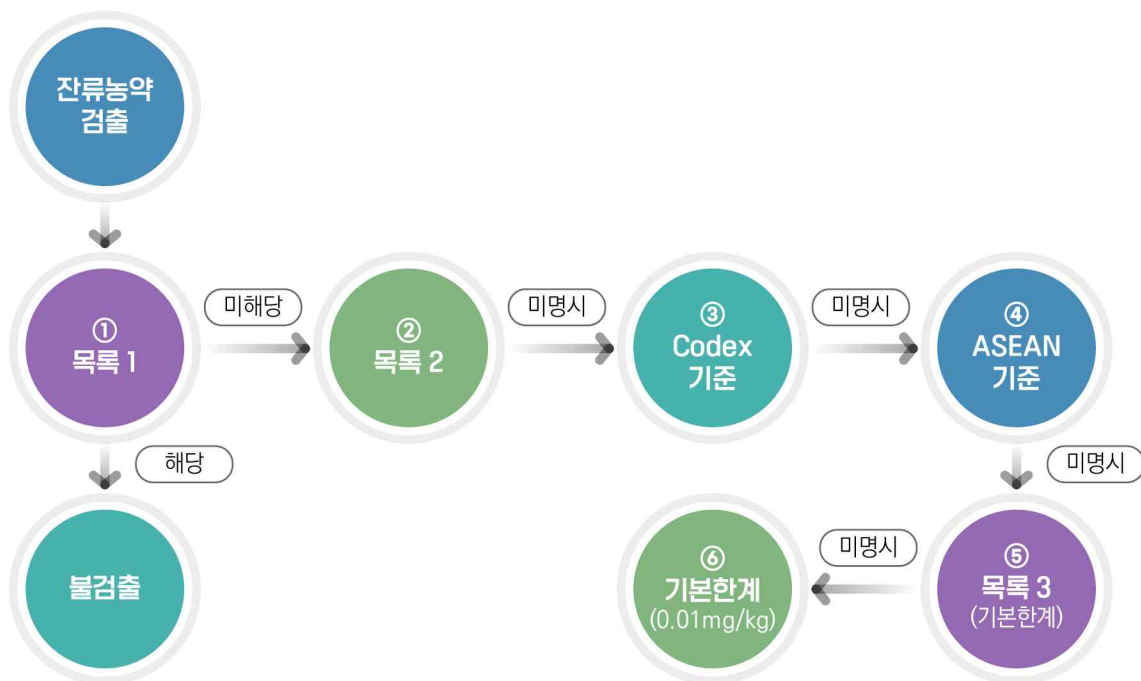
■ (참고) 태국 잔류농약 기준 적용 체계

- 태국은 잔류농약 기준에 대해 자국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Codex 기준과 아세안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모든 기준이 없을 경우 기본한계를 적용하는 관리 체계를 운영함

관련 규정

- 공중보건부 고시 제460호 ‘잔류농약 함유 식품’²⁹⁾

적용 절차



- (① 목록 1) 「1992년 유해물질법」 및 그 개정본에 따른 제4종 농업용 유해물질로, 검출되어서는 안 됨
- (② 목록 2) 목록 1 이외의 농약은 목록 2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로 검출
- (③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MRL) 목록 2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Codex 기준³⁰⁾ 이하로 검출
- (④ 아세안(ASEAN) MRL) Codex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ASEAN MRL³¹⁾ 이하로 검출
- (⑤ 목록 3) ②~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목록 3에서 별도로 규정한 기본한계(default limit) 적용
- (⑥ 기본한계) 목록 3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한계 0.01 mg/kg 이하로 검출

29)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제460호 ‘잔류농약 함유 식품’ (<https://ratchakitcha.soc.go.th/documents/75163.pdf>)

30)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 중 잔류농약 데이터베이스
(<https://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codex-texts/dbs/pestres/en/>)

31) 아세안(ASEAN) 잔류허용기준 (<https://food.fda.moph.go.th/media.php?id=788224238371872768&name=ASEAN-MRLs%20.pdf>)

붙임 8 일본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미생물 기준·규격

구분	관련 기준
한국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세균수(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1) 살균제품: $n=5, c=2, m=100,000, M=500,000$ 2) 비살균제품: $n=5, c=2, m=1,000,000, M=5,000,000$ - 대장균군 : $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해당) - 대장균 : $n=5, c=2, m=0, M=10$(살균제품 제외) -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유산균 첨가제품에 해당)
일본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동결 직전 미가열) - 세균수: 검체 1g 당 3,000,000 이하 - 대장균: 음성 * 냉동식품 중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동결한 것으로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이외의 것을 말함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동결 직전 가열) - 세균수: 검체 1g 당 100,000 이하 - 대장균: 음성

(한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1호)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³²⁾

- ▶ (참고) 동결 직전 미가열 식품 중, 밀가루를 주 원재료로 하고 섭취 전에 가열 공정이 필요한 냉동 빵 생지 타입의 식품은 대장균 음성 기준 미적용

32)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78334000&dataType=0&pageNo=1)

붙임 9 EU 신소재식품 정의

신소재식품

- **(명칭)** 신소재식품(Novel Food)
- **(정의)** 회원국의 EU 가입일과 관계없이 1997년 5월 15일 이전 EU에서 상당한 정도로 섭취된 이력이 없으며, 규정(EU) 2015/2283 제3조 2(a)항의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food)을 의미함
- **(범위)** '규정(EU) 2015/2283 제3조 2항(a) 범주표' 참고

관련 규정

- 신소재식품 규정(EU) 2015/2283³³⁾
- 신소재식품 목록 설정 시행규정(EU) 2017/2470³⁴⁾

관련 DB

- EU 신소재식품 승인현황 카탈로그³⁵⁾

규정(EU) 2015/2283 제3조 2항(a) 범주

- (i)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 내에서 식품으로 또는 식품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분자 구조 또는 의도적으로 변형된 분자 구조를 가진 식품
- (ii) 미생물, 균류 또는 조류로 구성되거나 분리 또는 생산된 식품
- (iii) 광물 유래 물질로 구성되거나 분리 또는 생산된 식품
- (iv) 식물 또는 그 부분으로 구성, 분리 또는 생산된 식품. 단, 식품이 EU 내에서 안전한 식품 사용 이력이 있고 다음의 방법으로 생산한 식물 또는 여러 동일한 종으로 구성, 분리 또는 생산된 경우는 제외
 - 1997년 5월 15일 이전 EU 내 식품 생산에 사용된 전통 육종 방식; 또는
 - 1997년 5월 15일 이전 EU 내 식품 생산에 사용된 적이 없는 비전통적 육종 방식으로 해당 방식이 식품의 영양가, 대사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 수준(level of undesirable substances)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조성 또는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 (v) 동물 또는 그 부분으로 구성, 분리 또는 생산된 식품. 단,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 내에서 식품 생산에 사용된 전통적 사육 방식으로 얻은 동물 및 EU 내에서 안전한 식품 사용 이력이 있는 해당 동물 식품은 제외
- (vi) 동물, 식물, 미생물, 균류 또는 조류에서 유래한 세포나 조직을 배양하여 구성, 분리 또는 생산된 식품
- (vii) 1997년 5월 15일 이전 EU 내 식량 생산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생산 공정을 통해 얻은 식품으로 영양가, 대사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조성 또는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viii) 본 항의 (f)에 정의된 가공된 나노물질(engineered nanomaterials)로 구성된 식품
- (ix) 지침 2002/46/EC, 규정(EC) No 1925/2006 또는 규정(EU) No 609/2013에 따라 사용된 비타민, 무기질 및 기타성분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997년 5월 15일 이전 EU 내 식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생산 공정이 본항의 (a)(vii)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적용된 경우; 또는 본 항의 (f)에 정의된 가공된 나노물질을 함유하거나 나노물질로 구성된 경우
- (x) 1997년 5월 15일 이전 EU 내 식품보충제에만 사용된 식품으로 지침 2002/46/EC 제2조 (a)항에서 정의하는 식품보충제가 아닌 식품에 사용할 용도인 경우

33) 유럽연합, 규정(EU) 2015/2283 (<https://eur-lex.europa.eu/eli/reg/2015/2283/2021-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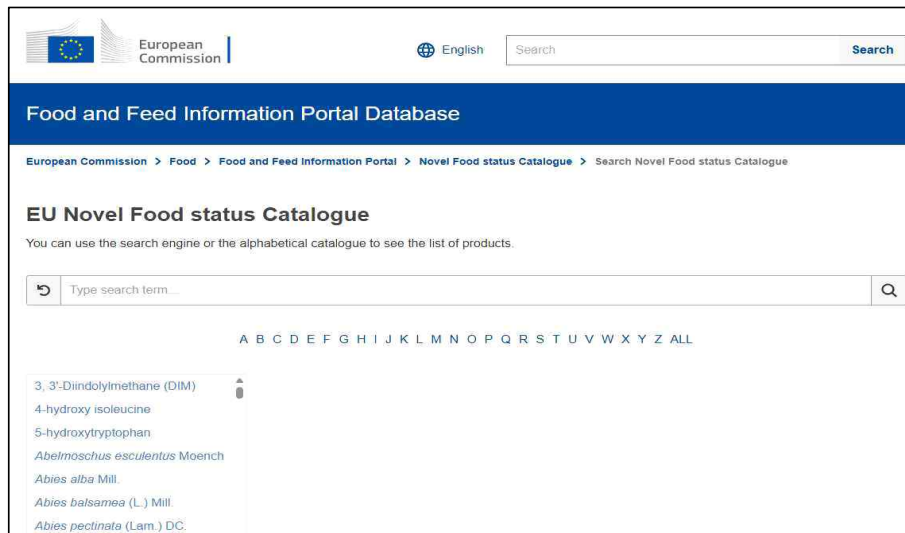
34) 유럽연합, 시행규정(EU) 2017/2470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17/2470/2024-11-07)

35) 유럽연합, EU Novel Food status Catalogue (<https://ec.europa.eu/food/food-feed-portal/screen/novel-food-catalogue/search>)

■ (참고) EU 신소재식품 승인현황 카탈로그 DB

DB 개요

- (명칭) EU 신소재식품 승인현황 카탈로그(EU Novel Food status Catalogue)
- (내용) 식품원료의 신소재식품 승인 여부 안내
- (제공 범위) ① 학명 ② 동의어 ③ 국가별 일반 명칭 ④ 설명 ⑤ 신소재식품 승인 여부 ⑥ 국가별 관할 당국 연락처
- (조회 방법) '유럽연합 신소재식품 카탈로그'³⁶⁾ 접속 후, 알파벳 순으로 검색



- (신소재식품 승인현황별 의미)

표시	의미	내용
	비 신소재식품	본 제품은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 시판되었으며, 1997년 5월 15일 이전 충분한 섭취 이력이 있음. 따라서 본 제품의 시장접근은 신소재식품 규정(EU) 2015/2283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판 전 신소재식품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일부 회원국은 특정 법률로 본 제품의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서 시판을 제한할 수 있어, 관할 당국에 문의(check)하는 것이 권고됨
	식품보충제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신소재식품	회원국 관할 당국 정보에 따르면, 본 제품은 1997년 5월 15일 이전 식품보충제로 사용된 이력이 있음. 즉, 식품보충제의 원료로서의 사용은 신소재식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다른 용도로서의 사용은 신소재식품 규정 적용 대상으로 승인이 필요함
	승인된 신소재식품	안전성 평가를 거쳐 신소재식품으로 승인되었으며, 시행규정(EU) 2017/2470 목록에 포함됨. 목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함
	승인 대상 신소재식품	회원국 관할 당국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본 제품은 1997년 5월 15일 이전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 사용되지 않음. 따라서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 시판되기 전 신소재식품 규정에 따른 안전성 평가가 요구됨
	협의 요청 신소재식품	신소재식품 자격 결정 관련 규정(EU) 2018/45623)에 따라 제출된 회원국 협의 요청 대상 제품.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공개되며, 카탈로그에도 추후 반영됨: https://ec.europa.eu/food/safety/novel_food/consultation-process_en

36) 유럽연합, 신소재식품 카탈로그 (<https://ec.europa.eu/food/food-feed-portal/screen/novel-food-catalogue/search>)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26년 1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